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신청 연장기간 확대〉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2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신청 연장기간 확대	2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6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신청 연장기간 확대

개정안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신청 총 연장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③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 ----- ----- -----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같은 항 제3호----- ----- ----- ----- ----- -----.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5조¹⁾에 따라 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

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②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며, ③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 기간(수집·운반업 6개월, 중간·최종·종합처분업 3년, 재활용업 2년)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④ 허가권자는 사업계획

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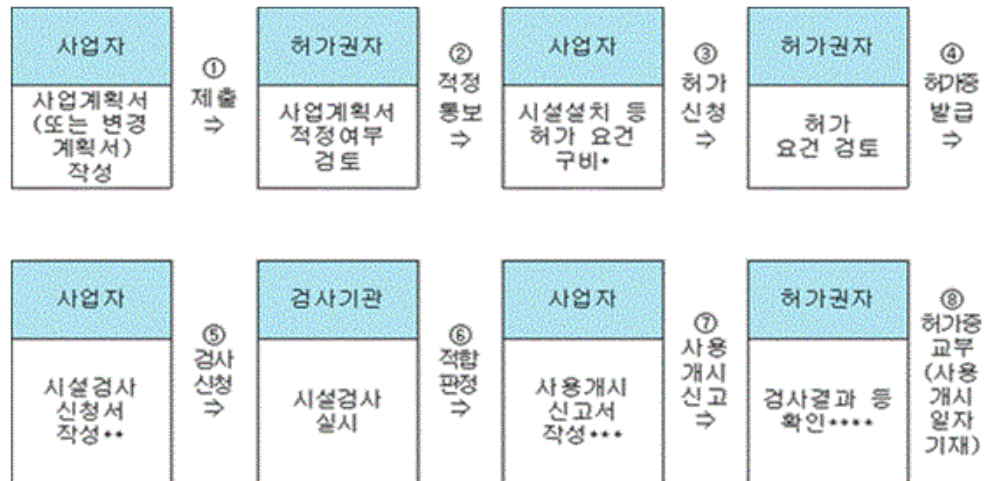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총 연장기간 1년(수집·운반업 6개월, 최종·종합처분업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업종별 처리방식, 설치시설 및 허가 신청기간 】

구 분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처리방식	소각	매립	소각+매립
설치대상	소각시설	매립장	소각장+매립장
신청기간	4년(3년+연장1년)	5년(3년+연장2년)	5년(3년+연장2년)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장 기간을 차등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 등 일반적 사유의 경우 대 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최종처분업(매립시설)이 중간처분업(소각

시설)에 비해 시설 구축과 복구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송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간처분업의 경우 현행 연장기간(1년) 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고, 총 연장기간이 2년인 최종·종합처분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인허가 반려나 주민 민원에 기인한 행정소송은 사업자의 귀책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사법 절차의 장기화(통상 2~3년 소요) 위험은 업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에너지 회수·이용 확대 등으로 소각시설이 복합화·고도화·대형화되면서 설비의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허가신청 연장기간을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소송 진행 시 물리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허가 완료 기간의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